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증감된 통리 수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 임

3. 주요내용

- 통 · 리장의 정수 조정(별표)
 - 587명 통 · 리장 → 595명 통 · 리장으로 조정 (통 · 리장 수 8명 ↑)
 - 고아읍 증 1명 : 괴평4리 무지개아파트 (38통)
 - 도량동 증 1명 : 뜨란채 아파트 분통 (37통)
 - 선주원남동 증 1명 : 금오산어울림 아파트 신축 (46통)
 - 인동동 증 2명 : 서한이다음아파트 분통 (61 ~ 62통)
 - 양포동 증 3명 : 우미린 아파트 신축 (41 ~ 43통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“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”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87명에서 고아읍 증 1명, 도량동 증 1명, 선주원남동 증 1명, 인동동 증 2명, 양포동 증 3명 등 총 8명이 증가된 595명으로 조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